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의안 번호	2742
----------	------

제출일자 : 2025.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21,154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을 출연 (‘25년 말 1만분의 1.2 → 1만분의 1.0 개정 예정)

- 붙임 1. 출연 심의요구서
2.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3. 출연기관 현황

1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기관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출자·출연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출연 예정금액 : 21,154천원(군비 21,154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2025년도</th> <th colspan="3">2026년도 예산안</th> <th rowspan="2">전년대비 증감액</th> </tr> <tr> <th>연구원 요구액</th> <th>부서 산정액</th> <th>증감</th> </tr> </thead> <tbody> <tr> <td>출연금 (군비100%)</td> <td>27,132</td> <td>21,154</td> <td>21,154</td> <td>0</td> <td>▲5,974</td> </tr> </tbody> </table>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연구원 요구액	부서 산정액	증감	출연금 (군비100%)	27,132	21,154	21,154	0	▲5,974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연구원 요구액	부서 산정액	증감												
출연금 (군비100%)	27,132	21,154	21,154	0	▲5,974											
출자·출연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지도감독부서인견(중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1-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 부서 검토 의견

< 이사회 2024년도 사업 평가 >

- 전반적으로 연초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연구원 주요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여 목표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지방세 교육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러닝 교육을 신규 개설하는 등 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하였고,
 - 지방세 쟁송사무 자문 등 출연기관인 자치단체의 만족도가 높은 세정운영 협력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 실무 담당자의 역량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음
 - TV 다큐멘터리 제작과 대국민 샷폼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지방세에 대한 공공의 이해 증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 연구원 핵심기능인 연구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연구과제 수행 실적은 증가했으나, 지방세입 제도 발전을 뒷받침하고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질적 향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사회 2024년도 결산 평가 >

- '24년도 결산서 검토 결과 외부감사인(새로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와 같이 연구원 재무제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외부 감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회계 및 재무 절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일부 사업에서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사업비는 예산의 약 20%가 미집행된 상태이므로, 이는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보완할 필요성을 시사
 - 전체 수입의 약 10.7%에 해당하는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잉여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연구 분야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 조성이 요구됨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개정 예정인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 편성이 필요함.('25년 말 1만분의 1.2 → 1만분의 1.0 개정 예정)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연구사업과 지자체 협력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입 확충과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개선을 제안하고 점검하겠음.

3 출연금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결산 지방세	2024년 결산 보통세 (C)	2026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출연금	211,540,323	211,539,719	21,154	21,154	0	▲5,974

1-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전화번호 : 02-2071-2748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인원현황 (2025년 8월 기준)	구 분	계	원 장	연구직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	
	정 원	78명	1명	50명	2명	4명	21명	
	현 원	64명	1명	34명	2명	4명	23명	
	총인원	98명	정원의외 인원 34명 (과건공무원12, 위촉연구원13, 위촉전문원3, 행정원4, 청사관리원2)					
임 원 (2025년 8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비 고		
	이 사 장	정 종 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4.2.2. ~ 2027.2.1.		
	부이사장	김 하 수	경상북도 청도군수			2025.3.13. ~ 2026.3.12.		
	이 사	강 성 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김 성 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당 연 직		
	이 사	오 준 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4.8.30. ~ 2025.8.29.		
	이 사	이 태 산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2024.8.30. ~ 2025.8.29.		
	이 사	조 병 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2024.8.30. ~ 2025.8.29.		
	이 사	신 동 현	충청남도 자치안전실장			2024.8.30. ~ 2025.8.29.		
	이 사	김 성 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2025.3.13. ~ 2026.3.12.		
	이 사	강 범 석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25.3.13. ~ 2026.3.12.		
	이 사	김 성	전라남도 장흥군수			2025.3.13. ~ 2026.3.12.		
	이 사	박 관 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2023.8.30. ~ 2025.8.29.		
	감 사	김 정 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김 경 태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4.2.28. ~ 2026.2.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39,826 (‘11~’25 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재무현황 (백만원) ‘24.12.31기준	자산	27,444	
	예산액	18,069	17,379	19,269		부채	1,875	
	지자체 지원액	13,797	12,383	13,078		자본	25,568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8,063			16,309		1,820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 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 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 25년도 말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정 출연율 인하 예정 (현행)1만분의 1.2 → (개정)1만분의 1.0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

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대구광역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미래를 대구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910(2025.8.14.)호와 관련입니다.
3.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출연금 확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구.군에서는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집계표 1부. 끝.

대구광역시장



수신자 대구광역시중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동구청장(세무1과장), 대구광역시서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남구청장(세무1과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세무1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세무과장), 달성군수(세무과장), 군위군수(재무과장)

주무관	김하정	세정담당	권수현	세정담당관	진결 2025. 8. 14. 정동화
협조자					
시행	세정담당관-10106	(2025. 8. 14.)	접수	세무과-2869	(2025. 8. 14.)
우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 http://www.daegu.go.kr
전화번호	063-803-2604	팩스번호 063-220-2604		/ 18kkokko@korea.kr	/ 부분공개

2026년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 산정내역

(단위 : 천원)

자치단체명	① '24년 결산 지방세	'24년 결산 보통세			'26년 출연금			
		②소계(㉔+㉕)	③현년도㉔	④과년도㉕	⑤'25년 정산액	⑥'26년 출연분 (㉔*1.0/10000)	⑦'26년 출연금 (㉔=㉕+㉖)	
대구광역시	대구시 소계							
	대구시 본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211,540,323	211,539,719	207,299,102	4,240,617		21,154	21,154
	군위군							

2026년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 산정내역

□ 지방세연구원 혁신방안에 따라 조정된 출연비율*(1만분의 1.0)로 산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개정 예정(1만분의 1.2 → 1만분의 1.0)

(단위 : 천원)

자치단체명	① '24년 결산 지방세	'24년 결산 보통세			'26년 출연금		
		②소계(㉠+㉡)	③현년도㉠	④과년도㉡	⑤'25년 정산액	⑥'26년 출연분 (②*1.0/10000)	⑦'26년 출연금 (⑦=⑥+⑤)
대구광역시	대구시 소계	4,399,595,193	4,054,422,964	4,016,628,568	37,794,396	405,442	405,442
	대구시 본청	3,472,733,926	3,127,565,450	3,102,409,246	25,156,204	312,757	312,757
	중구	66,682,852	66,682,852	65,756,061	926,791	6,668	6,668
	동구	106,478,813	106,477,240	105,098,377	1,378,863	10,648	10,648
	서구	55,317,533	55,316,488	54,715,467	601,021	5,532	5,532
	남구	39,992,715	39,992,715	39,642,026	350,689	3,999	3,999
	북구	110,805,387	110,804,858	109,359,900	1,444,958	11,080	11,080
	수성구	159,978,862	159,978,860	158,105,947	1,872,913	15,998	15,998
	달서구	153,614,541	153,614,541	152,033,200	1,581,341	15,361	15,361
	달성군	211,540,323	211,539,719	207,299,102	4,240,617	21,154	21,154
	군위군	22,450,241	22,450,241	22,209,242	240,999	2,245	2,245